

법률 자문 결과 보고서

연 번	구분 (기관명)	법무도우미 공개대상	개요 및 자문(질의)요지	답변요지	자문 회신일	비 고 (변호사)
1	계약 (○○○ 유치원)	공개	<p>○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「제2조(평가기준 및 평가방법) 제2항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하며, 용역 분야별 평가 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.」에 대한 법률 해석을 두고 업체와 유치원 사이에 의견이 발생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○○○ 유치원은 소속 차량 임차용역계약 체결을 위해 2013.8.16. 입찰공고를 하였고, - 2013.8.28. 낙찰 1순위 업체를 적격심사 점수 부족으로 부적격 판정 함. - 2013.8.30. 신인도 평가로 가산점을 받기 위해 여성기업 호가인증 제출(인증일 2013.8.30.) - 2013.9.2.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2항에 의거 적격심사에서 탈락 <p>☞ 심사기준일을 업체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찰한 후에 이루어지는 적격 심사일로 주장하고, 유치원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고 각각 주장</p>	<p>☞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2항은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. 입찰공고 당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그 후 자격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부적격 판정을 반복할 수 없음.</p>	2013. 09.04	최영식 변호사

연 번	구분 (기관명)	법무도우미 공개대상	개요 및 자문(질의)요지	답변요지	자문 회신일	비 고 (변호사)
2	계약 (○○초)	공개	<p>○ 업무 경과 내용(사건 개요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교에 지난 10월 11일 한우 유전자 검사 결과 납품받은 한우가 비한우로 판정을 받음 - 본교는 A업체에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 사전통지함 - 11월 18일 A 업체로 부터 계약 해지에 관하여 동의 회신 - 11월21일 A 업체에서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에 이의 의견서 제출 <p>○ 자문요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A업체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부정당업체로 제재 여부자로 제재가 가능 여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A업체가 고의로 비한우를 한우로 속여 납품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실함. - 고의성 없는 업체에 대해서까지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됨. - A업체에게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이 어려움으로 부정당업체 제재는 위법하다고 보임. 	2013. 11.27	유병일 변호사
3	계약 (○○중)	공개	<p>급식물품(김치류)소액수의 계약보증금 납부 건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계약기간 2013.03.04-08.31까지 김치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회사의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. 2. 계약금액 10%인보증금액을 지급각서로 대체. 3. 지급각서의 금액을 수령 하고자 하나 수취인 불명 및 연락이 두절. 4. “갑”이 지급해야할“을”의 급식물품대금 에 대하여 계약보증금 일부 상계 처리가 가능한 지 판단이 안됨. 	<p>상계가능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교(갑) 측이 가지고 있는 계약보증금채권과 (주)○○○(을)이 가지고 있는 급식물품대금 채권이 모두 변재기에 도래하고, 당사자간의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상계처리 가능. 2.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함. 	2013. 10.02	박정수 변호사

연 번	구분 (기관명)	법무도우미 공개대상	개요 및 자문(질의)요지	답변요지	자문 회신일	비 고 (변호사)
4	계약 (○○초)	공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약기간 중 폐업으로 인한 계약보증금 세입관련 - 기존 업체((주)○○○)로부터 계약보증금 세입 조치 해야 하는 지요? - 세입조치 대상은?(대표? 사내이사?) - 새로 계약한 업체의 대표(●●●)가 기존폐업한 업체((주)○○○)의 사내이사로 있었으므로, 기존 업체 대표가 미납부시 새로 계약한 업체에게 10월 용역료를 계약보증금 상계 사유로 학교로 세입조치해도 되는지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주)○○○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유지보수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세입조치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- (주)○○○만 세입조치 대상임 - ●●●이 (주)○○○를 경영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귀 교는 (주)○○○에 대한 과거의 채권을 가지고 새로 계약한 ●●●에게 상계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단 	2013. 10.07.	박정수 변호사의2
5	보상금 (○○교)	공개	<p>1. 사건 개요 : 2013년 11월 18일 월요일 15시 25분경 기악부 학생들 하교 지도를 하던 강선혜 강사(업체소속이 아닌 개인적인 지위로 학교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)가 음악실 앞 복도 모퉁이에서 학교 버스를 타려고 복도를 전력질주 하던 이주형 학생(고등 2학년 1반)과 우측 측면에서 충돌함. 충격 정도가 심하여 강사가 공중에 높게 뜬 후에 우측 팔꿈치를 바닥에 짚으며 엉덩방아를 찧었음</p> <p>2. 자문 요지</p> <p>가. 인천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구두 문의 결과 보상금 청구시 반려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는데, 반려되는게 맞는지</p> <p>나. 보상금 청구가 반려 시 학교 자체 예산으로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와 보상을 해주게 되면 치료비 등을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문 요청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이 사건 사고는 학교 내에서 학생이 복도를 전력질주하던 중 계약직 강사에게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고서 가해 학생의 학부모에 대한 학교나 안전공제회의 구상권 행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사고는 “교육활동중의 학교 안전사고에 해당한다”고 할 것이므로, 이와 견해를 달리한 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신청 반려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2. 계약직 강사는 학교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근무하던 중 학생의 부주의에 의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, 공제급여만으로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, 학교는 보상이 안된 나머지 치료비, 일실수입 등 손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 규정에 따라 계약직 강사에게 요양보상, 휴업보상, 장애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	2013. 12.12	고정섭 변호사